

第22回達西區議會(定期會)

## 議會本會議會議錄(附錄)

第4號

大邱直轄市達西區議會事務課

### 目 次

1. 大邱直轄市達西區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	25面
2. 大邱直轄市達西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案)審查報告書	34面
3. 大邱直轄市達西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查報告書	36面

##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12. 22

내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3. 12. 7
- 다. 회부일자 : 93. 12. 13
- 라. 상정일자 : 93. 12. 21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배경

- 88. 5. 1 조례 제59호로 제정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와 88. 5. 1 조례 제60호로 제정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행정쇄신차원에서 통합운영코자 함.
-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함.

####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함.
- 본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사업인, 소득금고 운영의 융자 대상사업, 융자대상, 융자금액, 대부기간 등을 규정함.
- 또한 특별지원사업의 아래 내용을 규정한다.
  - 대상사업, 지원대상 선정, 융자 한도액, 대부기간, 신청방법, 융자금 상환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 부칙 규정으로 본 조례는 회계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94. 1. 1 부터 시행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전액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하고 지원증인 자금은 본 조례에 의해 융자된 것으로 간주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 개정은 88. 5. 1 조례 제59호로 제정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와 유사한 성격인 88. 5. 1 조례 제60호로 제정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를 흡수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통합 운영코자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제안설명 요지와 같이 동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함이 좋다고 판단됨.

#### 4. 토론요지 : 없음

신청부 출범후 행정쇄신 차원에서 유사성격의 각종 조례를 통합 운영코자 개정하므로 원안가 결함이 좋다고 판단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 6. 첨부 : 대구직할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1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과리조례개정 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한다.

###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응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목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 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응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한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한다.

#### 제 2 장 금고운영

제 3 조(응자대상사업) 응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 가. 경제작물 : 고등소채, 인삼, 약초, 유실수
  - 나. 축 산 : 한우입식, 낙농, 양돈, 양계, 육우 등
  - 다. 기 타 : 단기성 및 중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 가.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 나. 구관장
- 다. 기타 생산기반 조성

3. 특별지원사업으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 4 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통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해당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지역내의 마을단지 또는 직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기피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이내로 한다.

제 6 조 (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상환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3년이내 상환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거치 3년 이내 상환

② 제1항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 7 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 9 조(융자조건)**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는 융자의 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고 인정되는 조건을 볼일 수 있다.

**제 10 조(감독)**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 3 장 특별지원사업

**제 11 조(융자대상마을 및 가구선정)** ① 융자대상마을 및 가구는 구 관내에서 융자를 희망하는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마을 및 가구 제외)하되 새마을운동주앙협의회 대구직할시달서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 및 가구를 선정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 1. 마을선정

- 가. 당해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 나.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 다.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 2. 가구선정

- 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 나.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다. 2년이상 관내 정주하고 있는 가구

② 구청장이 사업 대상마을 및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과 구지회로 하여금 동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 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 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이내로 하고, 가구당 5백만원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 14 조(대부기간)** 융자금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제 15 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 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 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동조례제7조제3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 16 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년1회로 하되, 그 기한은 동조례제14조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제 17 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구지회와 협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동조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입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구청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 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1동 1특화사업 자금융자 특례) ①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명산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1동1특화사업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동1특화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 상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1동당 45백만원이내로 한다.

④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열니 3퍼센트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 한다.

⑤ 동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 조(감독)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구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 4 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 21 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2 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 23 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외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 24 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 5 장 보 칙

제 25 조(융자금의 대출) 구청장은 동조례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 27 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 28 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동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 29 조(감면조치) 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 30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94. 1.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자금은 전액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용자된 용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용자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서식 ]

##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

1. 마 을 명 : 대구직할시 동 통 마을

2. 대부 신청 금액 :

3. 대부 신청 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5. 대부신청사업계획 :

가. 사업 명 :

나. 사업 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 원 계획 :

(단위 : 원)

총사업비	융 자	자 부 금	자 부 담 방 법	비 고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총수익	총 비 용	순 수 약	비 고

※ 사업수지예산명세 : 별첨

5. 마 을 규 약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새마을 소득사업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 ○ 통 대 표 자

성 명

①

위 신청인이 귀 구로부터 차용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 대보증 체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199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성 주

소 명

①

대구직 할시 달서구청장 귀하